

부산광역시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3. 21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3. 21

다. 상 정 일 자 : 제100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위원회(2002. 4. 4)원안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구용대 세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관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및 관련조문을 정리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및 수수료 규정을 조례로 신설하여 징수코자 함.

3. 관련법령 및 조례

-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(수수료)
- 사하구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(요율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이번 조례 개정안은 2001. 12. 29자로 개정공포(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)된 음반.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

- 노래연습장업, 비디오물 시청제공업, 게임물 제공업등 등록관련 수수료 요율을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현실화계획과 병행하여 원가산정되었으며 부산시내 타구·군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현실화 하였으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

5. 결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의결